
우리나라 주요 FTA의 철강재 원산지 규정 협상에 대한 비교 분석

이승택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rrangement of Rules of the Origin of Steel Products in Korea's Major FTAs

Seoung-Taek Lee^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Wonkwang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5 September 2019, Revised 16 October 2019, Accepted 29 October 2019

Abstract

As Korea's steel industry exports 38 percent of its total steel production, the futur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steel industry will change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FTA negotiations. The overall industrial structure of the domestic steel industry depends on the rules of origin,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the effect of concessionary tariffs. Therefore, negotiations on rules of origin are as important as tariff liberalization for Korea's steel industry. Korea's cold-rolled and plated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negatively affected as the country of origin standards of steel products have not considered the steel production processes in Korea.

In future FTA talks, the country of origin rules should be agreed on a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basis. This result would secure a stable export market through increased predictability of steelmakers and reduce the risk of increased costs of oil and intangible produc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tructure of domestic supply and demand so that it does not impose constraints on the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Finally,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should consider the opinions of the domestic steel industry.

Keywords: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FTA, Rules of Origin, Steel

JEL Classifications: F23, M52

^a First Author, E-mail: agio77@wku.ac.kr

I. 서론

세계 경제는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WTO가 출범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에 의한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무역 질서의 확립이 고조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제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아세안·필리핀·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주로 동남아 지역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이 시장을 선점하였으며 2011년 2월에는 인도와의 EPA를 체결하여 주요 신흥시장으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중국은 2010년 아세안과의 FTA를 체결한 이후 주요 거대시장과의 FTA를 아직 체결하지 못한 채 마카오·홍콩 등 9개 소지역과 추진으로 협상력을 제고하였고 이후 주요 경제국과의 체결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에 비해 우리는 칠레, EFTA,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과의 체결 이후 EU·미국·아세안·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타결하여 세계 주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일본 및 한·중·일 3국간 FTA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FTA 추진 초기에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크지 않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를 통해 협상 방법 및 국내 대응에 관한 학습효과를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권과의 협상을 추진했다. FTA는 시장개방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제도 전반을 한 단계 성숙시킴으로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기는 ‘외부 충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통해 물가안정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경제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점이 있다.

우리 철강 산업은 국내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으로 조선·자동차 등 수요산업에 안정적 철강공급 통해 꾸준히 경쟁력을 향상해 왔다. 또한 전체 철강재 생산량 중 38%를 수출

하는 수출지향 산업이기에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철강 산업의 미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다가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OECD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철강교역에서 철강제품은 이미 무관세가 실현되어 선진국과의 FTA 추진을 통한 철강산업의 직접적인 관세양허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호주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는 제품 형상이 크게 바뀐에도 불구하고 압연 공정은 단순 작업이기에 해외에서 수입된 소재를 재가공한 것은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대로 원산지증명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원산지 규정이 양허관세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철강 산업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원산지 규정 협상은 관세자유화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 철강제품 수출국인 EU, 아세안, 인도, 미국 등과의 원산지 체결 과정과 규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 냉연 도금업체들이 열연강관 부족 및 수입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0년과 국내 열연강관 공급이 안정된 2018년의 주요 철강재 수출품의 부가가치율을 분석하여, 철강 제품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주요국과의 원산지 규정을 거울삼아 향후 기체결 국가와의 재협상 또는 주요 신흥국과의 원산지 협상 시 국내 철강산업의 대외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FTA와 원산지 규정

1.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모든 규정을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과 그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간주되는 특정 지역을 연관시키는 지리적 관련성을 뜻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원산지란 결국 “상품의 국적”을 나타낸다. 하지만 한 국가의 영역 밖에 있는 보호령, 속령, 식민지와 중국 귀속된 마카오,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Ko, 2006; Shin, 2007).¹⁾

특혜원산지규정이란 특정국가간의 관세율 인하하는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정한 규칙으로서 한 국가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우대를 취하는 특혜규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한 내부거래에 다른 규정”과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를 들 수 있다.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쌍방으로 우대하는 쌍방적 특혜규정은 ESCAP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TNDC),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과 같은 각종 RTA가 있다. 이와 같은 특혜원산지규정은 수혜국을 명확하게 구별함으로써 제3의 국가가 부당한 혜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데 북미지역의 NAFTA 모형과 유럽연합의 PANEURO 모형이 있다.(Chung, 2005)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무역정책상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즉 GATT의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특정 국가상품의 수입제한, 관세 쿼터, 차별적인 수량 제한조치 등의 조치와 같이 무역 제한조치를 비특혜적 목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산지를 판정하여 예외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적용한다.(Jeong, 2007)

원산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제품이 자국 시장에서 차별화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다.

1) EU, ASEAN, NAFTA와 같은 정치적·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는 GATT 협정문 제 24조에 의거, 법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에 준하므로 원산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생산의 의미가 없는 상품의 경우유과 적출국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또한 각종 무역조치의 실효성 확보, 무역특혜 제공시 특혜수혜 대상물품의 결정기준 마련 및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를 파악을 통한 정확한 수출입 통계의 객관성 확보 등²⁾을 위해서도 원산지 제도가 필요하다.

2. 원산지 결정 기준 통일의 중요성

원산지 결정기준은 통상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Rule)과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으로 구분된다.³⁾ 완전생산기준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광물 등 천연산품이나 천연산물만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상품에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국 이상의 국가가 물품의 생산에 참여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변형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Rules),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Rule), 특정가공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자재(소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자재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실질변형을 인정하는 기준이다.⁴⁾ 부가가치기준이란 수입 원자재(소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그 생산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특정공정기준이란 특정 공정을 거쳐

2) E. Ivan Kingston, "A Comparative Study of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9~10.

3)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9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코드)란 통계산출, 과표근거, 통관조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물품마다 부여하는 국제기준의 코드를 말한다. HS 코드는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6단위 이하의 사용에 있어서는 각국의 재량이 부여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10단위까지 사용하고 있다.

생산된 경우에 그 특정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통상적으로 협정문에 원산지 판정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개별 품목에 관한 원산지 기준은 세 번에 따라 분류된 수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부속서에 별도로 규정한다.

FTA상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FTA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하여 FTA에 의한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관세자유화 협상과 더불어 FTA 협상 상품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으로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Global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은 당해국가의 이익이나 소비자, 생산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비록 관세율 인하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도모하더라도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통해 역내의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통해 무역제한조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Ko, 2006) 이는 FTA 협정의 원산지 인정 범위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이 우회수입여부 판정, 관세수입,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국내 산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원산지 규정은 양국간 투자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 방지, 국내 민감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해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질적인 교역상대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FTA를 너무 많이 맺으면 오히려 교역효과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 철폐를 위한 FTA별 원산지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기업경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대부분 해외 조달 원자재로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원자재 및 수출 제품의 지역별 FTA 원산지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고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라인이나 수입 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비용은 상당하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단의 경우, 실질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부가가치가 발생된 생산 단계만 중요시되고 생산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비효율적 산업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Estevadeordal(2000)은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고안하여 엄격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위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MFN 관세율을 선택하여 FTA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을 주목하였다. Cadot et al.(2006)은 EU의 Pan European 시스템과 NAFTA의 준수비용을 각각 6.8%와 8%로 추정하였고 Anson et al.(2005)도 NAFTA 원산지 규정 준수 비용을 약 6%대로 추정하였다. Carrere and de Melo(2004)의 연구에서 NA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세부 내용이 원산지 관련 비용을 제시하였다.

Cho & Ahn(2011)은 우리가 체결한 FTA 수가 증가하였으나 각각의 FTA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이 통일성에 결여되어 이에 따른 수출업체의 부담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FTA별로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과 산정방식 등에서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나 기체결 상대 국가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Choi, Won-Mok(2011)은 역내가치 충족을 위한 비용은 특혜관세 이익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NAFTA의 경우 원산지 규정 준수 관련 비용은 수출가치의 2%에 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A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비용은 수출액의 10~25%에 이르고 있으며 태국과 교역하는 일본 기업들은 원산지규정의 대응을 위해 수출액의 1%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Spaghetti Bowl Cost⁵⁾는 기업들이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포기하고 일반 관세율로 교역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 못지않게 원산지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⁶⁾

5) Jadish Bhagwati, "Free Trade Toda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6) 최원목은 FTA간 상용성이 저하되고 서로 상이한 규정들이 도입됨으로써, 국제 교역규범 환경의 복잡성을 심화시켜 기업의 거래비용을 전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고자 편단화(fragmentation)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Table 1. Korean Steel Industry' s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y

	1995	2000	2005	2010	2016
steel production/GDP	2.2	2.0	2.5	2.2	1.5
steel export/national export	4.4	4.1	5.3	6.0	4.9
the portion of Korean employee (1,000 person)	2.8(79)	2.7(94)	2.4(81)	2.7(91)	2.6

source: homepage of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Table 2. Share of Korean crude steel production (unit : million ton, %)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World total	716.4	770.4	850.2	1,432.8	1,620.9	1,629.6
Korea	8.6	23.1 (3.0)	43.1 (5.1)	58.9 (4.1)	69.7 (4.3)	68.6 (4.3)

source: World Steel

Ⅲ. 철강산업 및 교역 동향

1. 철강산업 동향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2.2%에서, 2008년 2.7%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국내 총생산 증가에 따라 1.5%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철강재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수출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철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기반한 지속적인 수출확대 노력으로 1980년 15.7억 달러이던 철강재 수출이 2000년에는 76.3억 달러, 2010년에는 250억 달러, 2018년에는 28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고용은 1995년 7.9만명 수준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6.4만명까지 감소하였다. 철강업계의 설비증설 등 투자확대로 2014년에는 9.1만명까지 증가하여 제조업 고용비중도 2.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속의 철강 산업을 살펴보면 719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연 조강생산량이 100만톤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철강설비 확충과 국내 철강 수요 증가 영향으로 2002년부터는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을 유지하였으나

인도의 조강생산 확대에 따라 2006년 이후 6위의 철강생산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조강생산 비중은 '70년 0.1%에서 210년 현대제철의 고로 생산 시작으로 2016년에는 4.1%까지 비중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 초창기에는 범용 철강재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나, 2000년 들어 중국 철강산업의 급부상으로 인한 전세계적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제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철강재 생산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현대제철이 새롭게 일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열연강관의 자급도가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 무역

2005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철강재 무역 추이를 살펴보면, 신증설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수출 여력이 확대되었고, 인도, 아세안 등 주력 수출시장의 시황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우리 철강 업체들의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시장 개척 노력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

Table 3. Trend of Korean steel trade

(unit : thousand ton, million US\$)

year	export		import		trade balanc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2005	16,262	14,643	18,877	13,312	-2,614	1,331
2008	20,787	25,218	28,942	31,284	-8,155	-6,065
2010	24,881	25,020	25,090	21,112	-208	3,908
2011	29,091	31,302	23,121	23,963	5,970	8,338
2012	30,484	31,132	20,706	20,033	9,778	11,099
2013	29,191	27,485	19,392	18,666	9,798	8,819
2014	32,256	29,907	22,749	20,524	9,507	9,383
2015	31,551	24,290	22,056	15,651	9,495	8,639
2016	30,969	22,423	23,716	14,306	7,253	8,117
2017	31,668	26,954	19,738	15,539	11,930	11,414
2018	30,440	28,885	15,359	14,782	15,081	14,103

source: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Table 4. Export of main steel items

(unit : thousand ton, million US\$)

	2010		2015		2018		share
	quantity	YonY	quantity	YonY	quantity	YonY	
Total	24,881	21.1	31,551	-2.2	30,440	-3.9	100.0
flat products	17,524	17.3	24,797	7.4	23,266	-1.2	76.4
long products	3,207	-2.6	2,864	-13.1	3,214	10.7	10.6
tube and pipe	1,947	82.7	2,179	-42.4	2,037	-34.0	6.7
cast and forgings	549	0.5	693	0.3	667	3.7	2.2
Steel Wire	449	28.0	534	-0.4	574	-0.2	1.9
semi-product	1,205	241.8	482	-44.4	682	-24.5	2.7

source: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속되었다. 201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으로 인한 세계 철강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강재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철강재 수출액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에 세계 철강 수요 정체 및 이에 가격 약세로 수출액은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물량과 금액 기준 모두 2011년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1500만톤, 141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철강재의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설비 능력이 확대된 중후판과 열연강판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열연강판, 중후판,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등 관재류와 강관으로 이 품목들이 전체 수출의 83%를 상회

하고 있다.

철강재의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일본, 중국 등 대동북아시아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의 2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향 수출은 63.0%를 기록하였다. 특히 아세안향 수출 비중은 2010년에 22.5%, 2018년에는 20.2%를 기록하여 90년대 중반 22~24%를 기록한 이후 높은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현대제철의 고로 가동으로 인한 생산능력 확대에 의한 수입 대체 효과로 수입이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에 물량(1,539만톤, 22.2%↓), 금액(148억 달러, 4.9%↓) 모두 감소세 기록하였으나 국내 공급 능력 및 철강재 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높

Table 5. Steel export to the main regions (unit : thousand ton, %)

	2010			2015			2018		
	YonY	share		YonY	share		YonY	share	
North east Asia	7,302	4.5	29.3	7,643	-11.5	24.2	7,913	-5.6	26.0
ASEAN	5,595	32.4	22.5	6,334	-3.6	20.1	6,141	-3.9	20.2
Southwest Asia	2,314	13.7	9.3	3,463	29.6	11.0	3,463	10.3	11.4
middle	2,079	6.9	8.4	2,317	24.1	7.3	1,158	-29.2	3.8
Asia	18,279	16.3	73.5	20,570	0.2	65.2	19,184	-4.4	63.0
North America	2,276	68.5	9.1	4,303	-30.3	13.6	3,162	-19.3	10.4
Europe	1,658	4.4	6.7	3,702	40.1	11.7	4,635	2.8	15.2
Middle and South America	1,214	-2.2	4.9	2,427	9.5	7.7	2,745	10.2	9.0
Others	2,093	71.8	8.4	549	-19.6	1.7	714	3.2	2.4

source: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Table 6. Steel import of main items (unit : thousand ton, million %)

	2010		2015		2018		
	YonY		YonY		YonY	share	
Steel total	25,090	21.9	22,056	-3.0	15,359	-22.2	100.0
Flat Products	13,481	19.1	11,784	-8.4	8,620	-21.4	56.1
Long Products	4,125	46.5	5,726	10.4	3,332	-32.8	21.7
Pipe and Tubes	594	33.9	703	-9.4	560	-9.6	3.4
Casting and Forgings	534	19.9	592	5.9	591	-1.2	3.8
Steel Wire	174	20.3	313	11.5	253	0.5	1.6
semi products	6,182	14.2	2,937	-4.8	2,003	-14.7	13.7

source: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Table 7. Steel import from main countries (unit : thousand ton, million %)

	2010			2015			2018		
	Quantity	YonY	share	Quantity	YonY	share	Quantity	YonY	share
China	8,692	45.7	34.6	13,732	2.4	62.3	7,554	-34.5	49.2
Japan	11,058	11.9	44.1	6,601	-9.6	29.9	5,448	-8.7	35.5
Others	5,340	12.9	21.3	1,723	-15.3	7.8	2,357	0.9	15.3
World	25,090	21.9	100.0	22,056	-3.0	100.0	15,359	-22.2	100.0

source: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은 수준이다.

최대 수입국인 중국산 수입은 2018년에 755만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4.5% 감소하였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우리 철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철강재 수입도 일본 철강사들의 적극적인 수출 노력으로 2010년 사상 처음으로 1천만톤

을 초과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과 함께 우리의 주요 2대 수입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철강업계는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에서만 적자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미국, 인도 등과의 흑자로 일본과 중국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8. Major steel production ability in 2010 (unit : thousand ton, %)

Classification	1962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HR Coil(A)	56	156	6,554	12,946	28,890	33,435	38,810
Down Stream(B)	6	10	4,779	12,202	30,507	36,842	50,641
CR Sheet	6	10	1,801	5,994	16,455	18,023	24,463
Surface Treatment Plate	-	-	724	3,059	7,715	11,250	16,175
Pipe and Tube	-	-	2,254	3,149	6,337	7,569	10,003
Difference(B-A)	-50	-146	-1,775	-744	1,617	3,407	11,831

source: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Steel Production Capacity, 2009

IV. 철강재 원산지 협상 연구

1. 국내 철강제품 수급구조

철강제품의 제조 공정은 크게 고로 공정과 전기로 공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고로 공정은 철광석, 유연탄, 석회석 등 여러 광물을 혼합하여 고로에서 생산된 슬라브를 가지고 다시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일종의 중간재(소재) 성격을 지닌 열연강판으로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연한 냉연강판, 표면에 아연을 입힌 아연도금강판, 원형 모양으로 성형 가공된 강관을 만든다. 전기로 공정은 스크랩을 전기로에 넣어 반제품인 빌렛, 블룸을 생산하고 이 반제품을 다시 연속주조공정을 거쳐 철근, 형강 등 봉형강류를 생산한다.

1970년대 포항제철 설립을 통한 일관제철 체제를 구축으로 철강 자립의 기반을 확립하였고 고도 경제 성장기에 건설·조선·자동차·가전 등 수요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철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까지 국내에는 포스코만이 철광석·유연탄 등 원료에서 슬라브, 열연, 냉연도금강판까지 고로 전 공정을 포괄하는 고로를 갖고 있었다. 철근·형강 등 건설용 강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전기로 업체들이 주로 생산·조달하였으며 주요 고부가가치 강재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관 등 냉간 압연업체들이 하공정 설비를 갖추고 상공정의 열연강판을 원자재를 국내외에서 구매하고 재가공하여 생산하였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강관도 이 열연강판을 가공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고품질 열연강판 조달이 큰 관심사였다.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본격적인 발전과 함께 냉연강판 생산능력은 1980년 180만톤 생산 체제를 갖춘 후 2000년에는 1,600만톤, 2010년에는 2,500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표면처리강판도 1980년 72만톤에서 2010년에는 1,620만톤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건설용 배관 및 유정용에 주로 사용되는 강관의 설비능력은 정부의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 진작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요 산유국의 강관소비 증가로 1990년 300만톤 수준에서 2010년에는 1,000만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공정 업체들의 철강재 생산능력은 2000년 3,050만톤에서 2010년 5,064만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기간 열연강판 생산능력은 2,889만톤에서 3,881만톤으로의 증가에 그쳐 설비능력 기준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1,183만톤의 열연강판 공급부족에 직면하였다.

이처럼 우리 철강산업은 정부 정책 및 하공정 철강사의 대규모 설비 투자, 고로 건설 지연, 한보철강 부도 등의 이유로 2000년대 초까지 고로 설비에서 생산되는 열연강판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 이 부족분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는 구조를 보였다. 여기에 2005년 이후에는 중국의 급격한 설비증설로 저가의 중국산 열연수입도 급증하여 국내 열연 수입 구조에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제조공정이 열연강판과 달라 별도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후 슬라브·블

Table 9. Value added rate of main steel items

(unit: U\$, %)

	process	item	2010			2018			
			import price	export price	value added ratio	import price	export price	value added ratio	
	bloom	rolling	steel sheet piles	674	674	-3.6	556	1,382	148.6
	bloom	rolling	H section	647	647	-7.9	556	654	17.6
	bloom	rolling	angle section (large size)	855	855	18.4	556	679	22.1
	bloom	rolling	angle section (medium size)	845	845	17.4	556	574	3.2
	bloom	rolling	channel section (large size)	682	682	-2.3	556	613	10.3
	bloom	rolling	channel section (medium size)	707	707	1.3	556	575	3.4
	bloom	rolling	I section(large size)	649	649	-7.6	556	724	30.2
	bloom	rolling	I section(medium size)	790	790	11.6	556	1,167	109.9
	bloom	rolling	other section(large size)	734	734	4.9	556	1,529	175.0
	bloom	rolling	other section (medium size)	693	693	-0.7	556	661	18.9
	STS bloom(s)	rolling	STS section(S)	3,364	3,364	71.7	2,496	2,604	4.3
	hot rolled (HR) Coil	rolling	C section	1,173	1,173	44.6	609	785	28.9
	billet	rolling	round bar	1,822	1,822	68.6	536	None	
	billet	rolling	cold finished carbon bar	1,715	1,715	66.6	536	651	21.5
	billet	rolling	rebar	566	566	-1.1	536	578	7.8
	billet	rolling	wire rods	755	755	24.2	536	665	24.1
	bloom	rolling	light rail	1,669	1,669	58.2	556	730	31.3
	slab	rolling	plate	767	767	24.8	560	669	19.5
	slab	rolling	medium plate	708	708	18.5	560	615	9.8
	slab	rolling	HR sheet	1,124	1,124	48.7	560	701	25.2
	slab	rolling	HR coil	644	644	10.4	560	609	8.8
	slab	rolling	HR coil	1,053	1,053	45.2	560	1,304	132.9
	HR coil	rolling	CR sheet	1,186	1,186	45.2	609	804	32.0
	HR coil	rolling	CR coil	786	786	17.3	609	680	11.7
	HR coil	rolling	CR strip	1,338	1,338	51.4	609	1,986	226.1
	STS HR coil	rolling	STS CR sheet(s)	1,946	1,946	-17.6	1,811	3,087	70.5

STS HR coil	rolling	STS CR Strip(s)	2,589	2,589	11.6	1,811	1,946	7.5
STS HR coil	rolling	STS CR(s)	2,925	2,925	21.8	1,811	4,543	150.9
HR coil	rolling	Grain-oriented Electrical sheet	2,482	2,482	73.8	609	1,832	200.8
HR coil	rolling	Non-oriented Electrical sheet	916	916	29.0	609	845	38.8
HR coil	rolling · plating	Hot dipped galvanized sheet	911	911	28.6	609	722	18.6
HR coil	rolling · plating	Electrolytic Zinc Coated sheet	927	927	29.9	609	719	18.1
Electrolytic Zinc Coated Sheet	plating	prepainted galvanized sheet	1,188	1,188	30.1	722	845	17.0
CR(Cold Rolled) coil	plating	tin plate	1,174	1,174	32.3	680	1,038	52.6
CR coil	plating	chrom coated sheet	1,110	1,110	28.4	680	2,196	222.9
CR coil	plating	other surface treatment plate	827	827	3.9	680	1,255	84.6
HR coil	welding	spiral oil pipe (large size)	1,070	1,070	39.3	609	1,125	84.7
HR coil	welding	spiral oil pipe (medium size)	1,085	1,085	40.1	609	8,418	1,282.3
HR coil	welding	electric welded oil pipe (large size)	1,007	1,007	35.5	609	2,191	259.8
HR Coil	welding	electric welded oil pipe (medium size)	841	841	22.7	609	2,050	236.6
wire rods	wire drawing · plating	non-plating steel wire	1,468	1,468	54.9	665	1,313	97.4
wire rods	wire drawing · plating	zinc steel wire	1,282	1,282	48.4	665	839	26.2
wire rods	wire drawing · plating	other steel wire	2,493	2,493	73.4	665	952	43.2
STS wire rods(s)	wire drawing · plating	STS steel wire(s)	5,743	5,743	49.2	2295	3,009	31.1

source :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note, export and import is average price, S(Special steel)

룸·빌렛 등 반제품을 연간 압연하여 생산되는 하는 후판의 경우,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공급이 이를 미치지 못하여 많은 부분 일본·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왔

Table 10. Main steel export items

(unit : thousand ton)

item	year	2018	2017	2015	2010	2006
HR Coil		2,786	3,298	6,183	2,995	2,379
CR Coil		3,026	2,922	2,048	2,721	2,916
H section		1,070	1,046	1,133	1,238	1,249
prepainted galvanized sheet		1,187	1,236	1,111	1,171	811
Other Surface Treatment Plate		1,137	1,079	916	896	707
plate		1,383	1,647	1,498	849	986
Electrolytic Zinc Coated Sheet		843	785	690	848	684
rebar		74	41	114	697	217
electric welded oil pipe(large size)		323	935	296	545	192
electric welded oil pipe(medium size)		433	623	473	430	281
STS CR Coil(s)		496	486	489	427	363
Non-oriented Electrical Sheet		493	433	372	352	307
tin plate		352	383	339	327	466

source :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다. 이와 같이 주요 FTA가 진행되고 1,200만톤 규모의 현대제철 일관제철소가 가동되기 전인 2010년까지 우리 철강산업은 열연강판, 슬라브 등 반제품·중간재 및 후판의 국내공급 부족으로 일정량 수입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2. 철강제품 부가가치율 검토

국내 철강산업 공급구조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요 FTA가 진행되던 2010년까지 국내 철강산업은 하공정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열연강판 등 소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공급부족 상태가 지속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공정 제품의 수출가격과 원재료의 수입가격 비교를 통한 부가가치율을 산정해 보면 봉형강류의 경우 스테인리스 형강, C형강, 마봉강 등이 각각 71.7%, 44.6%, 66.6%로 높게 나왔으나 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다른 봉형강 제품들은 부가가치율이 10% 대에 불과하다.

해외 유정용으로 많이 수출되는 강판의 경우 30% 이상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차 가공품인 비도금강선, 아연

도강선, 기타 강선 등은 각각 54.9%, 48.4%, 73.4%의 높은 부가가치율을 기록하였으나 이와 같은 2차 철강 가공품이 국내 철강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국내 철강수출 중 54%를 차지하는 판재류 제품의 경우 열연박판, 냉연박판, 방향성 전기강판 등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열연강판, 냉연강판, 석도강판, 아연도강판, 표면처리강판 등 주요 수출주력 판재류 제품들은 수입 원자재 비율이 높아 반대로 부가가치율은 적게 나타난다. 2010년 약 300만톤이 수출된 보통강 열연광폭강대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0.4%에 불과하고 272만톤 수출된 냉연광폭강대도 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표면처리강판은 3.9%에 그쳤다. 봉형강 제품 중 주요 수출 품목인 H형강과 철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율이 각각 -7.9%, -1.1%로가 계산되어 이론적으로 수입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30만톤 이상 수출된 제품들 중 유정용강판의 부가가치율이 35.5%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후판, 전기아연도강판, 중소구경 전기용접송유관 등은 각각 24.8%,

Table 11. Comparison of rule of origin in the main FTAs⁷⁾

HS code	item	Korea-USA FTA	Korea-EU FTA	Korea · ASEAN FTA	Korea-India CEPA
7208	HR Coil	CTH	CTH	CTH or RVC 25%	CTH
7209	HR Coil	CTH	CTH	CTH or RVC 25%	CTH
7210	tin plate	CTH	CTH	CTH or RVC 25%	CTH
7211	STS sheet	CTH	CTH	CTH or RVC 25%	CTH
7212	tin plate	CTH	CTH	CTH or RVC 25%	CTH
7219	STS sheet	CTH	CTH	CTH or RVC 25%	CTH
7220		CTH	CTH	CTH or RVC 25%	CTH
7225	special tin plate	CTH	CTH	CTH or RVC 25%	CTH
7226		CTH	CTH	CTH or RVC 25%	CTH
7304	pipe and tube	CTH	CTH	CTH or RVC 25%	CTH and RVC 25%
7305		CTH	CTH	CTH or RVC 25%	CTH and RVC 25%
7306		CTH	CTH	CTH or RVC 25%	CTH and RVC 25%

29.9%, 22.7%의 부가가치율을 나타내며 대부분 품목의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도 판재류 제품의 경우, 열연박판(25.2), 냉연박판(32.0), 석도강판(52.6), 방향성 전기강판(200.8), 표면처리강판(84.6) 등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하지만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주요 수출 주력 판재류 제품들은 여전히 부가가치율은 적게 나타난다. 2018년 약 278만톤이 수출된 보통강 열연광폭강대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8.8%에 불과하고 303만톤 수출된 냉연광폭강대도 1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낮은 부가가치율을 기록하였다.

봉형강 제품 중 주요 수출 품목인 H형강의 경우, 17.6%의 부가가치율을 기록하였고, 30

만톤 이상 수출된 제품들 중 유정용강관의 부가가치율이 84.7%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후판, 전기아연도강판은 각각 19.5%, 18.1%의 부가가치율을 나타내어 25%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판재류의 부가가치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철광석, 유연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열연강판 가격 상승 대비 냉연강판, 도금강판 가격 상승률이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의 가격 차이는 평균 US\$100 수준이었는데 이 가격 차이는 확대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일관제철 공정을 보유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자체적으로 열연강판을 생산하여 하공정에 투입할 수 있으나 냉연·도금 단압업체들은 세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영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FTA 효과를 영위하기 위한 원

산지를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판정할 경우 인정 비율에 따라 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철철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급격한 설비 증설로 인한 세계 철강 시장의 초과공급 상황이 확대되는 가운데 냉연·도금 업체들이 쉽게 고로 사업에 진출할 상황도 아니다. 즉 소재를 구입해야 하는 국내 단압업체들은 경영압박에 봉착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냉연도금 제품의 해외수출 확대에 매진해 왔다.

3. 주요 FTA 철강 원산지 규정

1) 한·미 FTA

한·미 FTA 원산지 협상에서는 다른 FTA 협상과 달리 세번변경기준으로 원만히 타결되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국내의 반 FTA, 반미 정서로 인한 협상의 어려움 및 자동차·쇠고기·섬유·농산물 등 다른 관심품목에 비하여 한미 양국간 철강 산업의 상호 보완적 구조에 기인한다. 또한 미국·EU·일본·한국 등의 OECD 선진국들은 2004년 철강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한·미 FTA 양허의 직접적인 혜택은 이미 사라진 원인도 있다. 비록 미국과의 철강교역상 수출입 관세는 이미 폐지됐으나 자동차·조선·가전·기계 등 주요 철강 수요산업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인한 철강제품의 간접 수출이 확대되었다. 또한 양국간 경제동맹으로 인한 우호적 분위기로 과거 빈발했던 미국의 대한국 철강재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완화되는 등 우리 철강산업은 경영환경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2) 한·EU FTA

한·EU FTA 원산지 협상은 한·미 FTA 원산지 협상보다 까다롭게 진행됐다. EU 시장도 철강 무관세 지역으로 원산지 협상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FTA보다 낮았으나 국내 철강 생산 공정을 고려할 때 원산지 판정 시 불리한

부대조건이 추가됐다. 국내 철강 산업은 그동안 국내 철강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하공정 생산업체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다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한·EU FTA 철강 원산지 규정에는 이런 소재용 수입산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서 생산된 열연강판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만을 한국산으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인 후판·열연강판·냉연도금강판 등 보통강 판재류(HS코드 7208부터 7216)의 원산지 인정 조건은 제 7206호 또는 7207호의 잉곳, 다른 일차 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으로 한정하고 있다⁸⁾.

이 경우 해외에서 열연강판을 수입하여 냉연도금강판을 생산한 후 EU 지역에 수출할 경우 이 냉연도금강판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닌 열연강판의 생산국이 된다. 앞에 언급했듯이 EU 지역의 철강수입관세는 0%이므로 원산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차별은 발생하지 않으나 EU에서 철강재 반덤핑 제소를 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가령 EU가 일본의 냉연도금강판이나 강판 수출에 반덤핑 제소를 할 경우 일본에서 열연강판을 조달하여 냉연도금강판 및 강판을 EU에 수출한 국내 업체는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산으로 인정되어 함께 피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EU FTA 철강 원산지 협상은 한·미 FTA 철강 원산지 기준인 세번변경기준보다는 한 단계 후퇴한 결과로 보인다.

3)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 협상 초기에 아세안은 철강제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및 역내부가가치 40% 적용을 고수하였다. 2005년 협상 개시 시 우리 철강산업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기였기에 철강업계는 대부분의 수출 제품은 기초소재로 원자재 비율이 높아 역내부가가치 40% 기준 충족이 매우 어려움을 표명했다. 특히 대아세안 수출 비중이 높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석도강판, 아연도강판, 표면처리강판 등 대

7) 한·미 FTA, 한·EU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협정문 원산지 규정 참조

8) 한·EU FTA 원산지 규정

부분의 관세율은 원자재 비율이 타 품목보다 높아 역내부가가치 40% 기준 적용하면 대아세안 수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아세안의 역내 40% 부가가치기준의 강경한 요구에 대하여 대아세안 수출액 기준 천만불 이상을 A군, 3백만불 이상 천만불 이하를 B군, 백만불 이상 3백만불 이하를 C군, 백만불 이하를 D군으로 분류하고 A군, B군, C군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을 피력했다. 여기에 아세안이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고수하면 아세안 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에 따라 관세류 및 고급 철강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있어 한국산 철강재의 가격 상승 및 공급 감소로 아세안 철강세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철강제품의 경우 FTA 원산지 기준 적용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율 40%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로 합의하였다.

4)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경우 원산지 협상 개시 시 인도측은 'CTH+세번변경기준 40%, CTS+세번변경기준 35%, CTH+세번변경기준 30%, CTH+세번변경기준 35%'의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차공정용 소재인 열연강판은 공급부족 품목으로 매년 약 5백만톤 이상의 수입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체 가격 구성요소 중 원재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철강제품의 특성상 30%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피력하고 인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소재의 해외 조달이 많은 단압 및 강관 업체들의 경우, 협상타결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협상 중에 인도측은 세번변경 단독기준의 수용 불가능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수용 가능한 최저 부가가치 기준의 검토를 제차 요청했다.

특히 인도측은 우리 철강업체들이 원료를 수입한다 해도 부가가치기준이 25%는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국내 철강 산업은 기간산업이라 이윤, 감가상각 등을 모두 고려해도 부가가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인도와 강경하게 대립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봉형강 및 관세류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관철시키고 강관 품목에서는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 25% 동시 만족 기준으로 양보했다. 향후 강관제품의 대인도 수출 시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을 가공한 것에 한하여 국내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약이 발생한 것이다.

V. 결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된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경제통합 형태의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로 원료, 중간재(소재) 생산과 완제품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FTA 양허의 기본 결정기준인 원산지 판정 문제는 매우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FTA 협상을 통한 특혜관세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없어 개별 국가의 상이한 원산지 제도로 인해 무역거래의 비용 증대 및 신흥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우려가 상존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선·자동차·가전·기계 등 후방 수요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 따라서 우리의 FTA 확대를 통해 우리 철강산업은 더욱 세계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전절에서 2018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제품들의 부가가치율은 국내 수급 불균형 및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0년보다 높아졌으나 후관,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주요 수출 주력 관세류와 H형강의 부가가치율은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과 진행된 FTA 협상에서 국내 일부 철강 생산공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철강제품의 원산

지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냉연·도금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비록 우리나라 열연강관 공급능력이 확대되어 국내 조달이 용이해 졌으나 원자재 조달선의 다변화,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한 경영 활동에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판정이 우리 냉연·도금 업체에 제약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 등 우리 수출 주력시장과 FTA 협상 또는 기체결 국가와의 FTA 개정 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철강업체들의 예측 가능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 및 유·무형의 비용 증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으로 합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복잡한 원산지규정 체제가 확산될수록 원활한 무역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냉연·도금 업체와 같이 원자재 의존이 높고 해외 수출주도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업체들에게 부가가치기준 적용은 수입재료 획득 및 완제품 수출에 대한 제한 우려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된다. 특히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열연강관 등 소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하공정 제품의 부가가치율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규정상 부가가치를 적용은 향후 수출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 적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국내 철강업체들의 원활한 원재료 조달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해외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 수급 구조를 고려하여 세번변경기준에 제약조건을 부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U와의 FTA 원산지 협상과 같이 철강산업의 수급구조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비록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수출 원활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EU의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발동 시 잠재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EU가 국내 철강업체들의 주요 열연강관 조달 지역인 일본·중국의 철강업체들을 피소하면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철강재가 일본산·중국산으로 판정되어 우리 철강 업체들도 함께 피소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무역규제가 해소될 때까지 국내 업체들의 수출 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및 현지 변호사 선임 등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핵심 활동에 집중되어야 할 회사 역량을 피소 대응에 사용해야 하는 간접적 비용도 발생한다. 또한 국내 철강사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EU 사정으로 인한 통상 정책 영향으로 언제든지 우리 업체가 피소될 수 있는 지역적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협상 참여자는 국내 철강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FTA 협상 시 국내 여러 산업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 철강산업은 건설·조선·자동차·전자·기계 등 철강 다소비 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또한 철강재의 수출 확대를 통해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에 초석을 마련한 핵심 기반산업이다. 이후에도 우리의 소재 공급원 및 기반산업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내산업 전체 이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의 통합화 속에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진취적으로 추진한 FTA 협상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조건 없는 세번변경기준을 고수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해외 진출 장벽을 제거하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국제경쟁력 향상에 매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대국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nson, J., O. Cadot, A. Estevadeordal, J. de Melo,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 (2005)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3, pp.45-58.
- Carrere, C. and J. de Melo (2004)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vidence from NAFTA", CEPR Working Paper,
- Cadot, O., J. de Melo and B. Tumurchudur (2006)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 Assessment", *World Trade Review*.
- Cheong In-Kyo (2005) Empir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rules of origin,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Cho Mee-Jin and Ahn Kyung-Ae (2011) "The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s and the Analysis on the Domestic Firms' Use of FTAs", *Korea trade review*, 36(3), pp.83-105.
- Choi Won-Mok (2011) "How to Integrate Cost-Generating FTAs-Cost and Benefit Approach", *International Trade Law*, 97, pp.93-153.
- E. Ivan Kingston, "A Comparative Study of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9~10.
- Estevadeordal, A (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 4,
- Hokeman Bernard and Michel Kostecki (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from GATT to WTO", Oxford Univ Press, pp 161~177.
- Ko, Yong-Bu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Origin in Korea's FTA", *International Trade Law*, 71, pp.10-39.
- Shin, Han-Dong (2007)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n Rules of Origin of the Good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8(4), pp.133-153.
- Jeong, Jae-Wang (2007) "Legal Basis and Application Limits of the Rules of Origin",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439, pp.73-75.
- Korea Customs Service, FTA portal, cited at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Steel Data, cited at <http://steeldata.kosa.or.kr/default.jsp>
-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Steel Production Capacity", 2009
- World Steel, cited at <https://www.worldsteel.org/>